

# 「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」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8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3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안전교통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·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, 적용범위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의용소방대 지원범위(안 제3조)

- 3) 의용소방대 지원절차(안 제4조)
- 4) 지도·감독 (안 제5조)
- 5) 지원 중단(안 제6조)
- 6) 의용소방대 포상(안 제7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 
평창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 
강화하며,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내용으로는,

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고,  
재정 지원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지원 중단에 관해 정하였으며,  
화재 진압 등의 기여자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.

의용소방대 편성 및 운영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자체의 사무<sup>1)</sup>

---

1) 1)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

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
범위에 해당되나, 의용소방대법에서는 소방업무와 유사하게 도지사 및 소방서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기관사무로 분류하고 있음.

다만,

활동비 및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한 바,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우리 군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검토결과,

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, 상위법의 수권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적법하므로,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